

2020년 9월 28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승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6219

광주광역시 조례 제5534호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 전문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우수 전문인력(의무역학조사관) 확보를 위한 의료업무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급대상 용어 변경(제2조 제2호)
- 의료업무 등의 수당 인상(별표 1, 2)

광주광역시 조례 제5536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43조제9항”을 “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제정 당시 공동주택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주택법」이었으나,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이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2015.8.11.), 시행(2016.8.12.)됨에 따라 개정 조문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2015. 8. 11.) 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1-3조, 제5조)
- 타 법 개정사항 반영(제3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35호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위촉 위원은 과반수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위원회 심의안건의 발생빈도가 낮아 사실상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화 규정을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비상설화(제10조)
 -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5537호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성평등정책”을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성평등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1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0조제2항 중 “광주여성재단”을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30조제4항 전단 중 “비치할”을 “갖춰 들”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52조 중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않은 사항은”으로,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에 관한 위입법령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근거법령 명시(제6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 개정에 따른 지자체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절차 변경사항 반영(제6조 및 제22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38호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2,0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제8호”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 제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해에 준하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감면율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등 감면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2020. 1. 21.)사항을 반영하고 하천점용료 감면기준을 추가하여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점용료 부과 최소 금액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제3조제1항)
- 토지가격 산출 근거 법령 삽입(제3조제2항)
- 점용료 등의 감면에 따른 반환 규정 정비(제12조)
- 하천수 사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을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함(별표 1)
- 점용료 감면 기준 신설(별표 2 제8호나목 신설)

광주광역시 조례 제5539호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제2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을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를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 및 광주공연마루(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이란 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1의2. 광주공연마루란 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연장”을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광주공연마루”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대표 국악상설 공연장인 “광주공연마루”의 관리기관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공연마루”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관리시설에 포함시키고자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 광주공연마루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추가(제2조제1호의2)
- 광주공연마루 시설 사용료 규정 신설(별표)

광주광역시 조례 제5540호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2.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가축방역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금 등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에 따른 보상금·장려금 또는 생계안정 비용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구청장의 가축 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가축사육을 제한한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금
3. 그 밖에 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소유자 등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경우 농가별 피해 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축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가축방역심의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2.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전염병 재난관리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가축방역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가축방역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가축방역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보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① 법 제48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여부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가축방역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가축방역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가축방역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
1. 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정책 심의 및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도 소속 가축방역심의회 및 피해보상협의회 설치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축방역심의회 기능 및 구성(제6조 및 제7조)
○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기능 및 구성(제14조 및 제15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41호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국가지속가능목표(K-SDGs)와 광주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통계지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주민·민간단체·기업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주민과 민간단체·기업 등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과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을 단위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과 목표
2. 현황과 전망
3. 추진 전략과 원칙
4.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지표
6. 도시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의 계획
2.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
3. 그 밖에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행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최근 2년간의 이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의회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6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 ①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이하 “행정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 또는 개별 법령에 위원회 심의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행정계획을 통보받지 않더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 또는 이행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⑤ 위원회는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 또는 안건으로 상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점검결과
2.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추진상황의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 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3.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
4. 주요 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5.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및 공표
6.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지명하여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조정,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조정·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8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등) 시장은 시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본계획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 및 기관·법인·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계획의 수립·변경의 통보 등)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 및 검토 등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실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을 “녹색생활”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을 “녹색생활”로 한다.

제26조 앞에 “제5장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삭제한다.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광주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속가능발전”을 각각 “환경보전”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는 폐지한다.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1. 제정이유

○ 지역사회 문제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균형된 발전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데 기여

2.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함(제4조-제5조)

○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공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함(제8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42호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사”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4이상”을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49%”를 “49퍼센트”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하고”를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면”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를 “법 시행령 제56조의4”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을 “법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11인”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정지된 자”를 “정지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1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를 “각 호의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청수위생사

업”을 “청수위생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 및 건축물의 취득·건립·공급(분양 또는 임대), 관리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14. 불법 주·정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사업
16.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19.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2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2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제1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같은 항 중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를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영 제59조”를 “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5조”를 “법 시행령 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을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주무부처 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4조”를 “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에서 상법”을 “범위에서 「상법」”으로 한다.

제46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도시환경의 변화로 인해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사업이 기존 주택 건설 및 공급에서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업내용 추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도시재생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주거복지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을 추가하도록 함(제24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43호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의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외국인”이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외국인을 말한다.
 - 가. 시에 90일을 초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제한외국인
 - 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아동·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여러 가지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의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체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
 5.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6.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해당 연도의 지원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외국인주민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외국인주민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지원에 한한다.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2.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3. 외국인주민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한국어 및 생활정착·적응 교육과 정보제공 및 상담
2. 고층·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5.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및 외국인주민단체 활동
7. 그 밖의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관련 조사·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관련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4.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국장
5.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외국인주민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시장은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시장은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자조 단체나 조직을 구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나 조직을 통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홍보하거나 참여를 요청하고 외국인주민의 의무 등을 지도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외국인주민협의회)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외국인주민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책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등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제1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언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약정을 체결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 포상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봉사활동 권장)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권장한다.

제2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시장은 외국인주민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포상)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중 외국인주민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1. 제정이유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2.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외국인주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6조)
-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제11조)
-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44호

광주광역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유적”이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유적 발굴 및 조사”는 항일유적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유적 발굴·보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일유적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항일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항일유적에 대해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구의 협조요청) 시장은 항일유적 발굴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 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조사·연구 계획
2. 항일유적의 보존 및 안내판 등 설치 계획
3. 항일유적 선정 기준 등
4. 항일유적조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5. 그 밖에 항일유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항일유적 보호 활동의 지원 등) 시장은 항일유적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 또는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관련 국내·국의 항일유적 실태조사
2. 항일유적 발굴에 따른 안내판 등 설치
3. 항일유적의 교육·홍보
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5. 그 밖에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의 원칙) ① 항일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항일유적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일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유적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조례 ◆

1. 제정이유

-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시장은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해 시 관련 국내·국의 항일유적 실태조사, 항일유적 발굴에 따른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45호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 분야의 의제 발굴 및 정책 입안, 예산 수립 및 시행, 정책평가 및 반영 등 복지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가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지협치”란 시민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예산, 조례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복지혁신 및 실천방안 등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사안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복지협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복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복지협치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복지협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복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협치에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복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협치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한 복지협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협치 정책의 기본방향
2. 복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복지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복지협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협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복지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립·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3.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복지혁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민간대표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중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하는 사람
5. 사회복지 및 여성·가족 등 관련부서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6.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7. 광주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및 복지협치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8. 그 밖에 복지협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간 협의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 등은 회의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사항을 분야별로서의 심의·자문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과별 정책 의제 발굴
 2.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3.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4. 분과별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조사·연구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⑤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복지협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검토 및 조정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일정 등의 연계 및 조정
 4.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지원
 5.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복지협치에 필요한 지원
-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추천하는 민간대표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실무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위원 5명 이상
 2. 시의원
 3. 복지협치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위원회의 간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
- ⑤ 실무협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실무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복지협치 시민회의) ① 시장은 광주복지 협치 공감대 확산과 홍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협치 시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협치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 선정 등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그 협력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과 시, 시의회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복지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복지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국내·외 복지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3. 복지협치 유관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4.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5.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개최
 6. 복지협치사업의 집행 및 관리체계 구축
 7.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복지협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④ 시장은 복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백서 발간 등) 시장은 복지협치 정책의 추진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려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제감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복지협치 백서를 발간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각”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복지협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복지정책의 의제 발굴 및 정책 입안, 예산 수립 및 시행, 정책평가 및 반영 등 복지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복지협치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자치 실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한 복지협치 기본계획 및 연도별 복지협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함(제5조)
- 복지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제9조, 제12조~제13조)
- 광주복지 협치 공감대 확산과 홍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협치

광주광역시 조례 제5546호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아동·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나.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의 개발·시행
 - 라. 다문화가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
 - 마.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 바.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 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 아.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현황 및 생활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다문화가족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2.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4.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5. 제1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6.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추천한 사람
7.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⑦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등)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정보,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의 기관 소개, 대한민국 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응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사회적응교육 및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지, 시청각 자료 또는 교육용 자료 등을 발간·배포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의 역사·전통·문화 또는 언어 등에 관한 사항

2. 결혼이민자들의 출신 국가에 대한 체험 또는 거주 사례 등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제5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 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⑦ 시장이 제6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시장은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모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2.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3.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4.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5.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사회·문화적응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8.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설개선 지원

10.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 ④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⑤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⑦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⑧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7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보수교육에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비영리기관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중 다문화가족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1. 제정이유

○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

2.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5조)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6조~제8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47호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기계보호시설·소규모”를 “제품야적장, 기계보호시설·소규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신설하는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행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로 정하는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제품야적장”을 추가함(제22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48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시장이 분쟁의 조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감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은 ①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③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4항)

광주광역시 조례 제5549호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의 경감) ①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연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전 항의 경감 비율은 전 조에 따른 경감 비율보다 먼저 적용하여 합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연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토록 함(부칙 제2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50호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임시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광주광역시 조례 제5551호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마목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시시설이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도로연접기준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여 관내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에 연결한 도로의 폭을 “12m 이상(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 에서 “8m 이상” 으로 완화함(별표 1 마목)

광주광역시 조례 제5552호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청년프리랜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가 아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으로부터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등록표의 주소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경우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년프리랜서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청년프리랜서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청년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

청년프리랜서 지원에 필요한 제원의 조달방안

그 밖에 청년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의 계약실태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표준계약서) ①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은 청년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 등에게 청년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부문에서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청년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청년프리랜서를 위한 법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청년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청년프리랜서의 경력개발 지원

그 밖에 청년프리랜서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

1. 제정이유

○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청년프리랜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가 아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제2조)
-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8조)
-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년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청년프리랜서를 위한 법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청년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53호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보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보건조사관”이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안전보건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산업안전보건 지원계획)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산업안전보건 지원정책의 부문별 전략 및 과제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의 추진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및 예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원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중대재해기업 등에 대한 제재)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할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단)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보건조사관으로 위촉하여 광주광역시 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산업안전보건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산업안전보건센터)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추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안전보건조사관의 구성·운영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노동협력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노동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사업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특수고용이나 비정규직 종사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협력체계) 시장은 산업안전보건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

1. 제정이유

- 광주광역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시장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제9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54호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투자”를 “투자(시가 출연·출자하는 기관에서 출자한 기업)”로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제6조의 제목 “(우선 채용)”을 “(고용 확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을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으로, “5”를 “20”으로, “채용하도록”을 “고용하도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취업을 지원하기”를 “고용을 촉진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업 확대를”을 “일자리 창출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에 대한 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을 매년 파악하여 고용촉진 대책에 포함하도록 하며
- 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비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높이는 한편,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알리도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에 관한 시의 대책 협조대상 변경 (제3조)
-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6조)
-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알리도록 함(제8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55호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광주형일자리 기업”을 “광주형일자리 기업,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광주광역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의 대상에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추가함(제5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56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역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매제도) ① 시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경쟁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경쟁제품의 구매) 시장은 경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시작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판로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판로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의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판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1. 제정이유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경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5조)

○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57호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으며,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9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시의 빅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를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서”를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1. 개정이유

○ 빅데이터책임관을 빅데이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리

2. 주요내용

○ 빅데이터책임관 지정: 빅데이터책임관을 빅데이터업무 담당 록 함(제8조)

○ 위원회의 기능 추가: 위원회의 기능 중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성화 조례」 제9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함(

광주광역시 조례 제5558호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훈련·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시장은 소방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 ◆

1. 제정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방훈련·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제4조)
-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도록 함(제5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559호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라.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 국민의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에 한해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에 따르도록 함

2. 주요내용

-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도록 함(제2조)
-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에 따르도록 함(제3조)

광주광역시 규칙 제3212호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본청), 별표2(직속기관), 별표3 사업소(시립도서관·김치타운관리사무소)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해 기구조정 등에 따른 업무 신설 및 이관 등을 반영하여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별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업무이관 및 사업소 명칭변경 등에 따른 사무 정비
- 실무현장에 맞는 기안자 및 중요사무에 대한 전결권 조정
- 행정기구 조정내역 반영

광주광역시 규칙 제3213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6호를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제43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5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월”을 “1월”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4월 말까지”를 “2월10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를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추진 일정이 다소 늦어 보조사업자의 행정절차 등을 이행 시 사업 착공 및 보조금 정산이 지연됨에 따라 추진 일정을 조정하여 신속한 착공을 독려하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처리하여 사업 완료 후 조기 정산을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 착공 및 보조금 정산이 원활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추진 일정을 앞당김(제5조~제7조)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2. 개정이유

소송 위임 시 특정 법률고문번호사에 대한 건수 및 보수 편중 방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송사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3. 주요내용

소송 위임 시 특정 법률고문번호사에 대한 건수 및 보수 편중 방지 기준 신설(안 제7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spirit0902@korea.kr
-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6층 법무담당관)
- 3) 팩스 : 062-613-27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전화: 062-613-27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 법률고문번호사 1인의 수입 사건 건수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2조 소정의 보수 등이 해당 연도 법률고문번호사의 전체 수입 사건 건수와 보수 등의 3분의 1을 각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 ④ (생략) ⑤ <신 설>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법률고문번호사 1인의 수입 사건 건수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2조 소정의 보수 등이 해당 연도 법률고문번호사의 전체 수입 사건 건수와 보수 등의 3분의 1을 각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20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코로나19 계기로 보다 나은 시민건강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감염병 대응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기구 신설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 재난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예방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 조직을 분야별로 재편하고
-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관련 사무를 수행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여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중점산업별 클러스터 육성기반 마련 등 변화되는 환경에 조직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 기구신설: 1출장소(광주경제자유구역청 / 1청 1본부)
- 주요사무: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사무 수행

나.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하부조직 조정
 - (본청) 67과(4급) → 68과 (+1)
 - 신설(1): 감염병관리과
 - 기능명칭변경(±2): 재난예방과→자연재난과, 재난대응과→사회재난과
 - (직속기관) 5급 상당 47개 → 48개 (+1)
 - 신설(1): 신종감염병과(科)
 - (출장소) 부(4급) 신설 (+3)
 - 신설(3): 기획행정부, 투자유치부, 사업지원부
- 사무 신설 및 조정내용

- 감염병정책 및 감염병대응 신설(감염병관리과)
- 감염병 및 의약관리 사무이관(건강정책과 → 감염병관리과)
- 공공의료 사무 신설(건강정책과)
- 안전감찰 및 CCTV통합관제 사무이관(재난예방과 → 사회재난과)
- 자연재난대응 및 재난상황 사무이관(재난대응과 → 자연재난과)
- 신종감염병 사무 신설(보건환경연구원)
-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무 신설(광주경제자유구역청)

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 정원조정: 3,940명 → 3,998명(증 58 / 일반직 53, 연구직 5)
- 집행기관의 정원: 2,298명 → 2,356명(증 58)

라.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 기관별 조정 현황

구 분	합 계	본 청	의 회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현 행	3,940	1,464	71	42	1,545	818	-
조 정 후	3,998	1,472	71	42	1,550	818	45
증 감	+58	+8	-	-	+5	-	+45

○ 직종별 조정현황

- 총 관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현 행	3,940	1	2,236	15	129	30	1,529
조 정	3,998	1	2,289	15	134	30	1,529
증 감	+58	-	+53	-	+5	-	-

- 일반직

구 분	일 반 직									
	소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경력관	
현 행	2,236	19	88	332	714	803	245	17	18	
조 정	2,289	21	92	343	732	813	253	17	18	
증 감	+53	+2	+4	+11	+18	+10	+8	-	-	

- 연구·지도직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소 계	연구관	연구사	소 계	지도관	지도사
현 행	129	23	106	30	4	26
조 정	134	24	110	30	4	26
증 감	+5	+1	+4	-	-	-

○ 소방직

구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현 행	1,529	10	43	130	152	255	442	497
조 정	1,529	10	43	130	152	255	442	497
증 감	-	-	-	-	-	-	-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청(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 ※ (전화) 062-613-2351/2352, (팩스) 062-613-2329

- 붙임 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3.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4.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표 별첨) 1부. 끝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청·직속기관·사업소”를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화정로 149번지”를 “천변우하로 203”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합의제행정기관”을 “출장소”로 한다.

제1절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를 각각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로 하고,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270번길 25에 둔다.

제86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I,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II, AI융복합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4와 같다.

제87조(청장) ①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둔다.

②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88조(본부의 설치)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본부를 둔다.

제89조(혁신성장본부) 혁신성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혁신생태계 조성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사무
6. 그 밖에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무

제90조 앞에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을 삽입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실·과·직속기관·사업소”를 “실·과·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⑦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⑧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5제1항 중 “시·사업소청사”를 “시·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청사”로 한다.

⑨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⑩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⑪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⑫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⑬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⑭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⑮ 광주광역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별표4] <신설 2021.1.1.>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지구별 관할구역(제86조 관련)

지 구 별	관 할 구 역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I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석정동, 지석동, 대지동, 칠석동 일원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II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AI융복합지구	광주광역시 북구 오동동, 대촌동, 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일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행정기구의 설치·직급 등)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담당관·과장·단장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설치·직급 등) ① ----- ----- <u>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u> ----- -.
②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부·과 및 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u>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u> ----- -----.
제6조의 2(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자연재난 및 재해예방복구사업 총괄 기획·조정 4. ~ 7. (생략)	제6조의2(시민안전실) ----- -----. 1. ~ 2. (현행과 같음) 3. <u>재난</u> ----- ----- 4.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설치) ① (생략) ②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광역시 <u>서구 화정로 149번지</u> 에 둔다.	제19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천변우하로 203</u> -----.
제21조(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각종 <u>전염병</u> 등의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2. ~ 9. (생략) ② (생략)	제21조(소관사무) ① ----- -----. 1. --- <u>감염병</u> ----- ----- 2.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5장 합의제행정기관</u> <u><신 설></u>	<u>제5장 출장소</u> <u>제1절 광주경제자유구역청</u>
<u><신 설></u>	<u>제85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②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삼수로270번길 25에 둔다.

<신 설>	제86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 구역은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스마트 에너지산업지구 I, 스마트에너지산업 지구 II, AI융합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4와 같다.
<신 설>	제87조(청장) ①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둔다. ②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신 설>	제88조(본부의 설치)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본부를 둔다
<신 설>	제89조(혁신성장본부) 혁신성장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혁신생태계 조성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사무 6. 그 밖에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무
<신 설>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제85조 ~ 제87조 (생략)	제90조 ~ 제92조 (현행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와 같음)

33. 자연재난네트워크 구축·운영
 34.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5. 자연재난(설해·가뭄·황사·폭염·낙뢰·안개·화산폭발) 대응 및 수습 총괄
 36. 재난관리자원의 지정·관리·점검 및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37. 자연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사항
 38.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 및 운영
 39.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분석·평가
 40. 재난지원금 및 피해주민 간접지원제도 운영, 재해복구 응급대책
 41.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영 및 관리
 42. 지역안전도 진단제도 운영
 43. 풍수해 보험에 관한 사항
 44.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이재민지원에 관한 사항
 45.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46. 재난 예·경보 발령
 47. 재난·재해방송 운영·관리
-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대응과장”을 “사회재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난대비·대응”을 “사회재난 대비·대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재난안전상황실”을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안전상황 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5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사회재난관리 예방, 정책기획 및 운영
 26. 사회 재난취약분야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 등 제도개선
 27.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평가
 28.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모니터봉사단 관리, 재난징후 정보관리
 29.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
 30.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유지관리업 등록관리, 안전점검 등)
 31.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32.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 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34.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5.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36.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
 37. 그 밖에 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1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고령사회정책과·장애인복지과·건강정책과”를 “사회복지과·고령사회정책과·장애인복지과·건강정책과·감염병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 및 고령사회정책과장 및 장애인 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고령사회정책과장·장애인복지과장”으로, “식품안전과장”을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안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추진 및 건 강관리실 운영”을 “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29호 및 제37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 및 감염병 업무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병상관리
 3.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 감독

광주광역시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정책관·재난예방과·재난대응과”를 “안전정책관·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정책관·재난예방과장·재난대응과장”을 “안전정책관·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7호를 제3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7호 및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지역내 안전수준 진단에 관한 사항

38. 안전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예방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난관리”를 “자연재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수립 및 지역내 안전수준 진단”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재난취약분야”를 “자연재난 취약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제16호, 제18호, 제20호 및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0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자연재난 대비·대응 대책의 총괄·운영,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31. 자연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운영

32.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재난상황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4.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의료분쟁 전반
 5. 약무사업 기획·조정, 의약품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항
 6. 약사, 한약사 등 약 업무관련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7. 의료관계인 자격관리 및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8. 혈액업무 및 장기이식 등 생명윤리에 관한 사항
 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재난 대비 응급의료 지원대책 수립 및 지원 등)
 10. 감염병 예방·관리 단거,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11. 감염병 위기관리 단계별 대책 수립·시행
 12. 감염병 지역안전지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13. 감염병 대량 환자 발생 대비 병상확충계획 수립·시행
 14.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시책사업 추진
 15.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감염병 재난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18. 감염병 관련시설(전담병원, 격리시설 등) 지정·관리·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환자·접촉자·해외입국자 분류 및 이송·관리에 관한 사항
 20. 신종 감염병 확진자 동선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1. 감염병 안심병원 및 선별진료소 관리·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2. 감염병 관련 의약품·보호복 등 비축물자 관리
 23.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24. 감염병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신종 감염병 단계별·상황별 현황관리
 26. 긴급 의료지원단(의사, 간호사 등) 모집 및 운영·지원
 27. 감염병 위기관리 및 역학조사
 28. 보건소 등 역학조사 기술지원
 29. 방역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0. 감염병 표본감시 및 보관감시
 31. 신종 감염병 콜센터 운영 등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32. 생물테러 대응 및 교육훈련
 33. 신종·제출현 감염병 대응 및 교육·훈련
 34.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
 35. 한센병 및 에이즈·성병·결핵 관리에 관한 사항
 3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37. 역학조사 및 감염병전문가 교육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감염병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5제4항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 제28조의2제1항 중 “감염병조사과·수인성질환과”를 “감염병조사과·신종 감염병과 및 수인성질환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등 해외유입감염병 병원체 확인
 5. HIV 및 성매개 질환 확인
 7. 생물테러병원체 확인진단
 10.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질환 병원체 확인

14. 도심권 모기밀도 및 병원체 보유현황조사
 15. 자연환경계 참진드기 분포 및 병원체 보유조사
 16. 야생들쥐 및 기생털진드기 열성질환 감염률 조사
 17. C형간염 병원체 확인
 18. 말라리아 등 원충매개질환 검사
 19.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
- 제2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제1호 중 “식중독 원 인병원체”를 “인체·환경 가검물 식중독원인병원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계”를 “장내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장관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감시”를 각각 “감시사업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중전의 제8호) 중 “보건소”를 “자치구 보건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위험병원체확인진단(폴레라, 비브리오균 등 오염도 조사)
 8. 해외유입 실사환자 병원체 검사
 9. 환경 내 감염병 병원체 오염도 검사
 10. 바이러스성 안과질환 실험실 검사
- ④ 신종감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코로나19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
 2. 메르스, SARS 등 신종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
 3.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
 4.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등 병원체 확인 검사
 5.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등 신·변종 해외 유입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
 6. 크리미안콩고, 리프트밸리 등 출혈열 바이러스 감시
 7.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8. 국가 결핵예방 잠복결핵(IGRA) 지원사업 운영
 9. 레지오넬라균(환자) 및 환경수계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검사
 10. 공중보건위기 감염병 대응
 11.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연구
- 제5장의 제목 “합의제 행정기관”을 “출장소”로 한다.
- 제5장제1절(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절 광주경제자유구역청
- 제79조(청장)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 제80조(혁신성장본부장)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제81조(하부조직) ① 혁신성장본부에 기획행정부·투자유치부 및 사업지원부를 둔다.
- ② 기획행정부장과 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사업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평가
 2.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3. 조직, 정원 관리 및 인사
 4. 예산의 편성 및 운용
 5. 국비, 시비 등 투자재원 확보 총괄
 6. 복무·보안·기록물·공인 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7. 계약, 지출 및 결산
 8. 청사, 관사, 물품(차량) 관리

9. 홍보의 종합기획 및 조정

10. 홈페이지 및 홍보관 운영

11.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투자유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개선

3.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수립

4. 산업별 혁신생태계 구축

5.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유치 및 활성화

6. 광주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주요 투자 프로젝트 관리

8. 중점 유치산업별 기업·자본 유치

9.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10.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⑤ 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기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3.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발굴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5.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7. 실시계획 승인 및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

8. 기반시설 구축 및 국비 확보

9.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조성관리

10.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공장 등록

11.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12. 토지의 조사 및 등록

13.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

14. 사업장폐기물 처리

제82조 앞에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사업소”를 “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직속기관·사업소장”을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장”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사업소”를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업소장”을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중 “사업소장”을 각각 “사업소장,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사업소장”을 “사업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1호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각각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청”을 “본청·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각각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출장소의 장”로, “사업소”를 “출장소”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를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로 한다.

⑦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⑧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⑨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⑩ 광주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실·과·소·본부·사업소”를 “실·과·소·본부·사업소·출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실·과·소·본부·사업소장”을 “실·과·소·본부·사업소·출장소장”으로 한다.

⑪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의회사무처”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신 · 구조물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관·재난예방과·재난대응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	제12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 ---- 안전정책관·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
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안전정책관·재난예방과장·재난대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 ----- 안전정책관·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과장----- -----
③ 안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36. (생략)	1. ~ 36. (현행과 같음)
<신설>	37. 지역내 안전수준 진단에 관한 사항
<신설>	38. 안전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37. (생략)	39. (현행 제37호와 같음)
④ 재난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u>자연재난과장</u> -----
1. 재난관리 예방, 정책기획 및 운영	1. <u>자연재난관리</u>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7. 연간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역내 안전수준 진단	7. ----- 수립
8. 재난취약분야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장·단기 해소 등 제도개선	8. <u>자연재난 취약분야</u>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모니터봉사단 관리, 재난정후 정보관리	<삭제>
11. 삭제	
12. ~ 15. (생략)	12. ~ 15. (현행과 같음)
16.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	<삭제>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18.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평가	<삭제>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20.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유지관리업 등록관리, 안전점검 등)	<삭제>
21. 삭제	
22. (생략)	22. (현행과 같음)
23.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삭제>
24.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삭제>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삭제>
26.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삭제>
27.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분호신설 2020.01.01.>	<삭제>
28.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 <분호신설 2020.01.01.>	<삭제>
29. 그 밖에 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삭제>

지시한 사항의 처리 <2020.01.01.

종전 제27호에서 이동>

<신설>	30. 자연재난 대비·대응 대책의 총괄·운영,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신설>	31. 자연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운영
<신설>	32.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재난상황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신설>	33. 재난네트워크 구축·운영
<신설>	34.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35. 자연재난(설해·가뭄·황사·폭염·낙뢰·안개·화산폭발) 대응 및 수습총괄
<신설>	36. 재난관리자원의 지정·관리·점검 및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신설>	37. 자연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사항
<신설>	38.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 및 운영
<신설>	39.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분석·평가
<신설>	40. 재난지원금 및 피해주민 간접지원 제도 운영, 재해복구 응급대책
<신설>	41.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영 및 관리
<신설>	42. 지역안전도 진단제도 운영
<신설>	43. 풍수해 보험에 관한 사항
<신설>	44.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이재민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45.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신설>	46. 재난 예·경보 발령
<신설>	47. 재난·재해방송 운영·관리
⑤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u>사회재난과장</u> -----
1. 재난 대비·대응 대책의 총괄·운영,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1. <u>사회재난 대비·대응</u> -----
2. 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운영	2. <u>사회재난</u>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재난네트워크 구축·운영	<삭제>
6.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재난상황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6. <u>사회재난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u> ----- -----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11. 자연재난(설해·가뭄·황사·폭염·낙뢰·안개·화산폭발) 대응 및 수습총괄	<삭제>
12. 재난관리자원의 지정·관리·점검 및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삭제>
13. 자연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사항	<삭제>
14.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 및 운영	<삭제>

15. 안전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의료업무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분석·평가	<삭 제>	12.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병상관리	<삭 제>
17. 재난지원금 및 피해주민 간접지원 제도 운영, 재해복구 응급대책	<삭 제>	13.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 감독	<삭 제>
18.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영 및 관리	<삭 제>	14. 병상수급계획, 의료분쟁 등 의료관련 업무	<삭 제>
19. 지역안전도 진단제도 운영	<삭 제>	15. 약무사업 기획·조정, 의약품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0. 풍수해 보험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약사, 한약사 등 약 업무관련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1.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이재민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7. 의료관계인 자격관리 및 의료기기 관리	<삭 제>
2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삭 제>	18. 혈액업무 및 장기이식 등 생명윤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3. 재난 예·경보 발령	<삭 제>	1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재난 대비 응급의료 지원대책 수립 및 지원 등)	<삭 제>
24. 재난·재해방송 운영·관리	<삭 제>	20. ~ 23. (생 략)	20.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사회재난관리 예방, 정책기획 및 운영	24. 모자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및 건강관리실 운영	24. ----- 추진
<신 설>	26. 사회 재난취약분야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 등 제도개선	25. 감염병 감시,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27.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평가	26. 생물테러 대응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28.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모니터봉사단 관리, 재난징후 정보관리	27.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29.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신 설>	30.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유지관리업 등록관리, 안전점검 등)	29. 한센병·에이즈 및 성병·결핵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31.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30.·31. 삭 제	
<신 설>	32.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2. (생 략)	32. (현행과 같음)
<신 설>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33. ~ 36. 삭 제	
<신 설>	34.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7. 국가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35.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38. 역학조사 및 감염병전문가 교육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36.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	39.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37. 그 밖에 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0.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41.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4조(복지건강국에 두는 과) ① 복지건강국에 사회복지과·고령사회정책과·장애인복지과·건강정책과 및 식품안전과를 둔다.	제14조(복지건강국에 두는 과) ① ----- 사회복지과·고령사회정책과·장애인복지과·건강정책과·감염병관리과-----.	42. (생 략)	42.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사회복지과장 및 고령사회정책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강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식품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사회복지과장·고령사회정책과장·장애인복지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안전과장-----.	<신 설>	⑦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 의료 및 감염병 업무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⑥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2.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병상관리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3.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 감독
10. 삭 제			4.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의료분쟁 전 반
			5. 약무사업 기획·조정, 의약품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항
			6. 약사, 한약사 등 약 업무관련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7. 의료관계인 자격관리 및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8. 혈액업무 및 장기이식 등 생명윤리에 관한 사항
			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재난 대비 응

- 급의료 지원대책 수립 및 지원 등)
10. 감염병 예방·관리 단기,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11. 감염병 위기관리 단계별 대책 수립·시행
 12. 감염병 지역안전지수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13. 감염병 대량 환자 발생 대비 병상 확충계획 수립·시행
 14.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시책사업 추진
 15.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감염병 재난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18. 감염병 관린시설(전담병원, 격리시설 등) 지정·관리·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환자·접촉자·해외입국자 분류 및 이송·관리에 관한 사항
 20. 신종 감염병 확진자 동선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1. 감염병 안심병원 및 선별진료소 관리·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2. 감염병 관련 의약품·보호복 등 비축물자 관리
 23.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24. 감염병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신종 감염병 단계별·상황별 현황 관리
 26. 긴급 의료지원단(의사, 간호사 등) 모집 및 운영·지원
 27. 감염병 위기관리 및 역학조사
 28. 보건소 등 역학조사 기술지원
 29. 방역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0. 감염병 표본감시 및 보완감시
 31. 신종 감염병 콜센터 운영 등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32. 생물테러 대응 및 교육훈련
 33.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및 교육·훈련
 34.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
 35. 한센병 및 에이즈·성병·결핵 관리에 관한 사항
 3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37. 감염병전문가 교육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감염병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⑦ (생략)

제20조의5(일자리경제실에 두는 과) ① ~ ③ (생략)

④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20.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

21. ~ 25. (생략)

<신설>

⑤ ~ ⑦ (생략)

제28조의2(감염병연구부에 두는 과(科))
① 감염병연구부에는 감염병조사과·수인성질환과를 둔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0조의5(일자리경제실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19. (현행과 같음)

<삭제>

21. ~ 25. (현행과 같음)

26.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감염병연구부에 두는 과(科))
① ----- 감염병조사과·신종감염병과 및 수인성질환과-----.

② (생략)

③ 감염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3.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 진단

4. 매개체질환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 진단

5. 에이즈 및 성매개질환 병원체 확인 진단

6. 잠복결핵 면역학적 확인 진단

7. 생물테러 고위험병원체 확인 진단

8.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9.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실험실 감시

10. 모기매개질환 매개체 감시

11. 12. (생략)

13. 환경수계 레지오넬라균 검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4. 15. (생략)

<신설>

④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중독 원인병원체 규명 및 추적조사

2. 장관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 진단

② (현행과 같음)

③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등 해외유입감염병 병원체 확인

5. HIV 및 성매개 질환 확인

<삭제>

7. 생물테러병원체 확인진단

<삭제>

<삭제>

10.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질환 병원체 확인

11. 12. (현행과 같음)

<삭제>

14. 도심권 모기밀도 및 병원체 보유현황조사

15. 자연환경계 참진드기 분포 및 병원체 보유조사

16. 야생동물 및 기생털진드기 열성질환 감염률 조사

17. C형간염 병원체 확인

18. 말라리아 등 원충매개질환 검사

19.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

20. 21. (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음)

④ 신종감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코로나19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

2. 메르스, SARS 등 신종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

3.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

4.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등 병원체 확인 검사

5.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등 신·변종 해외 유입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

6. 크리미안콩고, 리프트밸리 등 출혈열 바이러스 감시

7.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8. 국가 결핵예방 잠복결핵(IGRA) 지원사업 운영

9. 레지오넬라균(환자) 및 환경수계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검사

10. 공중보건위기 감염병 대응

11.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연구

⑤ -----.

⑤ 인체·환경 가검물 식중독원인병원체 -----

2. 장내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장관계 -----

3. 급성설사질환 병원체 실험실 <u>감시</u>	3. ----- <u>감시사업 운영</u>
4.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실험실 <u>감시</u>	4. ----- <u>감시사업 운영</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도 <u>조사</u>	6. <u>고위험병원체확인진단(콜레라, 비브리오균등 오염도 조사)</u>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u>해위유입 설사환자 병원체 검사</u>
<신 설>	9. <u>환경 내 감염병 병원체 오염도 검사</u>
<신 설>	10. <u>바이러스성 안과질환 실험실 검사</u>
8. <u>보건소</u> 검사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	11. <u>자치구 보건소</u> -----
9. (생 략)	12. (현행 제9호와 같음)
제5장 합의제 행정기관	제5장 출장소
<신 설>	제1절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신 설>	제79조(청장) <u>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u>
<신 설>	제80조(혁신성장본부) <u>혁신성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u>
<신 설>	제81조(하부조직) ① <u>혁신성장본부에 기획행정부·투자유치부 및 사업지원부를 둔다.</u>
	② <u>기획행정부장과 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사업지원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③ <u>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평가</u>
	2. <u>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u>
	3. <u>조직, 정원 관리 및 인사</u>
	4. <u>예산의 편성 및 운용</u>
	5. <u>국비, 시비 등 투자재원 확보 총괄</u>
	6. <u>복무·보안·기록물·공인 관리 및 사무에 관한 사항</u>
	7. <u>계약, 지출 및 결산</u>
	8. <u>청사, 관사, 물품(차량) 관리</u>
	9. <u>홍보의 종합기획 및 조정</u>
	10. <u>홈페이지 및 홍보관 운영</u>
	11. <u>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④ <u>투자유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의 종합기획 및 조정</u>
	2. <u>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개선</u>
	3. <u>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수립</u>
	4. <u>산업별 혁신생태계 구축</u>
	5. <u>국내외 교육·연구기관 유치 및 활성화</u>
	6. <u>광주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u>
	7. <u>주요 투자 프로젝트 관리</u>
	8. <u>중점 유치산업별 기업·자본 유치</u>
	9. <u>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u>
	10. <u>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u>
	⑤ <u>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투자유치 기업 행정적·재정적 지원</u>

2. <u>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u>	2. <u>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u>
3. <u>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발굴</u>	3. <u>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발굴</u>
4. <u>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u>	4. <u>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u>
5. <u>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u>	5. <u>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u>
6. <u>개발사업시행자 지정</u>	6. <u>개발사업시행자 지정</u>
7. <u>실시계획 승인 및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u>	7. <u>실시계획 승인 및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u>
8. <u>기반시설 구축 및 국비 확보</u>	8. <u>기반시설 구축 및 국비 확보</u>
9. <u>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조성·관리</u>	9. <u>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조성·관리</u>
10. <u>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공장 등록</u>	10. <u>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공장 등록</u>
11. <u>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u>	11. <u>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u>
12. <u>토지의 조사 및 등록</u>	12. <u>토지의 조사 및 등록</u>
13. <u>부동산 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u>	13. <u>부동산 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u>
14. <u>사업장폐기물 처리</u>	14. <u>사업장폐기물 처리</u>
<신 설>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제79조 (생 략)	제82조 (현행 제79조와 같음)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940명”을 “3,99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98명”을 “2,356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중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94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3,998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2,298명	1. ----- 2,356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별표 3] <개정 2019.9.30., 2020.01.01., 2020.4.1. 2020.1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단위: 명)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비고
총 계		3,998							
정무직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2,289							
1-2급		1						1	
2-3급		2	1	1					
3급		16	11			1	3	1	
3-4급		2	1		1				
4급		92	62	5		3	19	3	
5급 이하 소계		2,158							
전문경력관 소계		18							
별정직 계		15							
1급 상당		1	1						
4급 상당		4	1	3					
5급 상당이하소계		10							
연구직 계		134							
연구관		24				18	6		
연구사		110							
지도직 계		30							
지도관		4				4			
지도사		26							
소방공무원 계		1,529							
소방정		10	5			5			
소방행이하 소계		1,519							

※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소방안전본부장, 소방학교장 제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광주광역시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94호

광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광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광산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9. 25.

광 주 광 역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224-21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학교)
- 명 칭 : 광주소방학교 다목적교육 훈련센터 건립사업

다. 사업규모

시설 종류	시설 명	구분	사 업 규 모				비고
			총규모(㎡)	기존(㎡)	철거(㎡)	증축(㎡)	
공공 청사	소방 학교	건축면적	4,283.17	2,745.57	208.35	1,745.95	건폐율 15.58%
		총연면적	10,967.25	6,448.09	208.35	4,727.51	용적률 36.63%
		용적률산정용	10,068.76	5,862.87	208.35	4,414.24	

라. 사업기간 : 2020. 9. 25. ~ 2021. 9. 25.(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사업시행자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성 명 :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고시 제 2020-411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추석명절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2020년 9월 28일(월) 0시부터 10월 11일(일) 24시까지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 9. 27.

광주광역시장

1.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벌칙) 동법 제80조제7호

2. (주요 행정명령 내용)

- ①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 개최 전면 금지
 -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 ② <집합금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 시설

-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28변경}
- ▲ 콜라텍^{※28변경}
- ▲ 단란주점^{※28변경}
- ▲ 감성주점^{※28변경}
- ▲ 헌팅포차^{※28변경}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8변경}
- ▲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
-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운영중단>
- ▲ 어린이집<운영중단(휴원)>
*긴급보육 유지
- ▲ 스포츠경기<무관중 경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은 2020년 9월 28일(월) 0시부터 10월 4일(일) 24시까지 집합금지 됨.

- ③ <집합제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하여 집합제한(일부시설 핵심 방역수칙 추가 부여)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 ▲ 노래연습장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 뷔페
- ▲ 종교시설
- ▲ 목욕탕·사우나
- ▲ 기원

대상 시설

<다중이용시설>

- ▲ 학원
- ▲ 건본주택
- ▲ 키즈카페(일반·기타유원시설업)
- ▲ 실내 결혼식장
- ▲ 영화관
- ▲ 장례식장
- ▲ 콜센터
- ▲ 공판장·위판장
- ▲ 건설현장 구내식당(일반음식점)
- ▲ 기업 내 구내식당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 ▲ 물류창고
- ▲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 ▲ 스터디카페, 독서실
- ▲ 긴급돌봄, 방과후 학교
- ▲ PC방
- ▲ 게임장·오락실
- ▲ 직업훈련기관
- ▲ 카페(휴게음식점 확대)
*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프랜차이즈형 포함),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포함
- ▲ 제과점(프랜차이즈형 포함)
- ▲ 실외 골프연습장
- ▲ 놀이공원(종합유원시설업)
- ▲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 ▲ 실내체육시설(대학운영 및 민간운영)
- ▲ 야구장, 축구장
- ▲ 청소년 수련시설
- ▲ 멀티방·DVD방

- 단,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시에는 즉시 해당 업체 및 관련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④ <공공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추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운영

⑤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들은 시설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 금지

- 단, 추석 연휴기간(9.30~10.4.) 제한적 비접촉 방식(가림막 필수) 면회 한시적 허용

3. (기 간) 2020. 9. 28.(월) 00:00 ~ 2020. 10. 11.(일) 24:00

4. (위반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법상 손해배상,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음

▶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붙임 집합제한시설 핵심 방역수칙(의무사항)

□ 중점관리시설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1일 2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시설 운영 전·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사-05시 영업금지 ▶ 노래 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 시 방, 마이크 소독(마이크 커버 교체)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이상 집합금지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뷔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블 간 간격유지(최소 1m) ▶ 공용집게 등 사용 시 비닐장갑 사용
중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 소모일 금지 ▶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목욕탕·사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사-05시 영업금지
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 공용물품(바둑판 등) 주기적 소독 ▶ 실내휴먼시설 운영 금지

□ 다중이용시설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 시설 운영 전·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상 집합금지 ▶ 시설 소독 및 수업 전후 환기 실시 등(1회 2회 이상)
전분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상 집합금지
키즈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 놀이기구 등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및 시설 환기실시
실내결혼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미만 출입금지 ▶ 집단(2인 이상) 취식 금지 ▶ 키보드·마우스 등 정기 소독(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게임장·오락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미만 출입금지 ▶ 집단(2인 이상) 취식 금지 ▶ 게임기 정기소독(대장작성) ▶ 무인운영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상 집합금지
실외골프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커룸 및 샤워시설 사용금지
놀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공용물품, 놀이기구 사용 후 소독 및 환기실시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 좌석 한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착석금지 표시)
실내체육시설(대학운영 및 민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상 집합금지 ▶ 체육물품 사용 전후 등 주기적 소독 ▶ 실내체육시설 동호회 활동금지 ▶ 실내휴먼시설 운영 금지
야구장·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샤워시설 사용 금지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장		
최소 년 수련 시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멀티방· DVD 방	▶ 실별 3인 이하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	

□ 공공운영시설

구분	시설책임자	이용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시설책임자·운영직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1일 1회 이상 운영직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 시설 운영 전·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 방역관리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KDJ 센터	▶ 컨벤션센터 내 시설 운영(대관) 50인 미만	
ACC, 전일방영245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좌석 한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착석금지 표시)	
공연장·영화관(국·공립)	▶ 4㎡당 1인 및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좌석 한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착석금지 표시)	
도서관(국·공립)	▶ 자료실 부분개방(대출, 반납만 허용하며 좌석이용 불가) ※ 작은도서관 포함	
박물관(국·공립)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단체입장 금지 ▶ 전시해설 금지 ▶ 다른 관객과 2미터 유지	
미술관(국·공립)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단체입장 금지 ▶ 전시해설 금지 ▶ 다른 관객과 2미터 유지 ▶ 시립미술관 내 체육시설(제이트볼, 테니스장) 생활체육동호회 활동금지	
공공기관부속시설(교육장 등)	▶ 4㎡당 1인 및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좌석 한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착석금지 표시)	
공공체육시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생활체육동호회 활동금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412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제한)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방문판매업 업체가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과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업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 발령하고, 그 외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청

1. 처분 대상 및 내용

- 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다단계 판매업) : 집합금지
 - 정부 고위험시설로서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 판매업체가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
 - 직접판매홍보관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업체로 통보
- ② 그 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한 다단계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방문판매업체(타 시도 등록·신고 포함) : 집합제한
 - 4㎡당 1명 인원 제한 및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허용
 - * 방역수칙 : 전자출입명부 설치, 마스크 착용, 출입자 증상 확인,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내에서 영업하는 불법(미등록·미신고) 업체 : 집합금지
 - 해당 업체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도 금지
- ④ 위와 관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추가 지정 또는 해제 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및 필요시 시설폐쇄 조치

※ 집합 :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모이거나 모이게 하는 행위

2.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3. 처분사유 : 시는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에 따라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집합금지하고, 그 외 방문판매 등 업체는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하여 집합제한을 유지합니다.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과 관련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역사회로의 확산 위험성이 있어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등 업체의 집합행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9.25. 중대본)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 2020-411호)

4. 처분기간 : 2020. 9. 28.(월) ~ 별도 해제시

5.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 9. 28. 부터

6.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제기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고, 불법(미등록·미신고) 업체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를 대관하는 자의 경우 방조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9. 문의처 : 일자리경제실 민생경제과 소비자보호팀 062-613-3743. 끝.

PC방, 게임장·오락실 핵심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

콜센터 집합제한 행정조치(기간연장) 고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집합제한 중인 **PC방, 게임장·오락실**에 대하여 **핵심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콜센터 집합제한 행정조치(기간연장)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9. 28.

2020. 9. 28.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1.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벌칙) 동법 제80조제7호

2. (처분대상) PC방, 게임장·오락실

3. (처분내용) 핵심방역수칙 변경(18세 미만 출입금지 → 삭제)

< 핵심 방역수칙 >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 시설 운영 전·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2인 이상) 취식 금지 ▶ 키보드·마우스 등 정기 소독(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만18세 미만 출입금지 → 삭제(9.28.) 	
게임장·오락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2인 이상) 취식 금지 ▶ 게임장 정기소독(대장작성) ▶ 무인운영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만18세 미만 출입금지 → 삭제(9.28.) 	

4. (기 간) 2020. 9. 28.(월) 12:00 ~ 2020. 10. 11.(일) 24:00

5. (위반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법상 손해배상,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음

▶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1. 기 간 : 2020. 9. 28.(월) 00시 ~ 10. 11.(일) 24시

2. 대 상 : 콜센터 68개소

계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비고
68	14	32	13	9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조치내용 :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및 장비 소독(대장작성) ■ 사업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사업장 내 종사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5. 위반 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조치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법상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처

○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 여성일자리팀 정용복 주무관 ☎ 062-613-3592. 끝